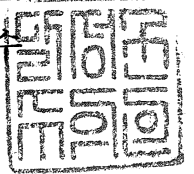


2020년도 (재)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1761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9. 11. 11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2020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달성복지재단 운영비 출연 : 814백만 원

-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교부
- 모금 및 배분사업,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
- 노인복지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3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의 자질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

- 붙임 1. 출연심의 요구서
2. 사업부서 검토의견
3. 출연기관 현황

출연 심의요구서

출연대상

- 기관명 :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
- 대 표 : 차준용(비영리 공익법인, 2008. 10. 15 설립)
- 일반현황
 - 소 재 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12길 66 (화원상설시장 건물 2층)
 - 기본재산 : 20억 원(달성군 출연금)
 - 주요사업
 - 시설운영 : 노인복지관, 장난감도서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36개 수탁시설
 - 모금사업 : 기부문화 및 기업사회공헌 활성화, 착한가게, 나눔 캠페인
 - 배분사업 : 지정·결연 후원, 저소득 가정 지원, 후원물품 등
 - 기획사업 : 홀로어르신 명절나기, 희망찾기 가족사랑 여행 지원 등

출연사업비

- 출연 예정금액 814백만 원
 - 운영비 : 814백만 원(군비)
-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

구 분	사업 기간	2019년 예산액	2020년 요구액	재 원 별				
				계	국비	시비	군비	기타
인건비	2020.01.01~12.31	313	360	360			360	
기본경비	2020.01.01~12.31	214	243	243			243	
시설지원사업 등	2020.01.01~12.31	176	111	111			111	
다둥이가족 페스티벌	2020.01.01~12.31	100	100	100			100	

출연필요성

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달성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 출연금 교부

근거법령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- 제20조(재정 지원)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제5조(기본재산의 조성)
-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 - 제11조(출연금 교부)

사업부서의 견 (총평)	○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등 재단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음 ○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다둥이 가족 페스티벌을 2020년도에도 달성복지재단 에서 주관할 예정이고 ○ 또한 모금 및 배분사업, 사회복지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군민에게 내실 있는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복지관, 국공립어린이집 등 36개 수탁시설 복지 종사자 자질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재단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을 교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경영평가 : 경영평가 제외 대상기관
 - 운영출연금 : 3년 평균 지원금 6억
 - 법인 사무국 상시인력 : 10인 미만

2.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

- 2020년 출연금 814백만 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
 - 보육팀장 추가 채용 및 기본 인상을 적용하여 인건비 증액
 - 사무실 이전 예산을 삭감하고 사회보험 인상률에 맞춰 복리후생비 증액
 -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사무실 공공요금을 추가 편성
 -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(원장) 전문교육 예산 추가 편성

3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최종) (A)	2020년 예산(안)			
			기관 요구액(B)	부서 검토액(C)	증감 (C-B)	전년대비 증감액(C-A)
총 계	530	803	814	814	0	11
인건비	308	313	360	360	0	47
기본경비	144	214	243	243	0	29
홍보사업		5	3	3	0	△2
시설지원	58	73	60	60	0	△13
수탁시설전출금		60	30	30	0	△30
조사연구		38	18	18	0	△20
다둥이가족 페스티벌		100	100	100	0	0
10주년 행사	20	0	0	0	0	0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				전화번호	617-9200	
					홈페이지	www.dswelfare.kr	
설립근거	법 률 : 민법,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: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					
주요연혁	설립연도 : 2008.10.15						
임 위 (15.9.1 현 재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임기	
	대표이사 (비상임)	차준용	前달성문화원 원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상임이사	최상진	前달성군청 자치행정국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김상근	수경복지재단 이사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장창식	前달성군청소년센터관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이은진	계명문화대학 유아교육과 교수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진덕수	덕수복지재단 이사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윤태만	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이미애	사회복지법인 서재어린이집 원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조갑연	큰나무집궁중약백숙 대표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이사	조병로	前달성군청 정책관광국장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감사	김대근	김대근세무사사무소 대표			2019.01.18~2021.01.17	
	비상임감사	김광환	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 관장			2019.01.18~2021.01.17	
주요기능	○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○ 복지자원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○ 복지 프로그램개발 사업 ○ 복지시설 간 협력 지원 ○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사업 ○ 복지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사업	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17년	2018년	2019년	재무현황 2018.12.31 기준	자산	2,445백만원
	예산액	1,124 백만원	1,466 백만원	1,413 백만원		부채	50백만원
	지자체 지원액	465 백만원	530 백만원	803 백만원		자본	2,395백만원

참고

상위 및 관계 법령(발췌)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(이하 "공익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 (기본재산의 조성) 재단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"달성군"이라 한다)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제11조 (출연금 교부) 군수는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